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40 발의연월일: 2024. 9. 13.

발 의 자:김동아·김남근・민병덕

최기상 · 김우영 · 조 국

백승아 · 김용민 · 김현정

김성환 · 모경종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분쟁조정 건수는 3,481건으로 전년도(2,846건) 대비 22% 증가했으며, 분야별로는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1,37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1,044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605건 등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실제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및 기술 탈취가 발생하더라도 분쟁 조정을 신청하기보다는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불공정행위를 강요받고 있으며, 이에 손해배상 범위 또한 상한선만 명시되어 있어 손해배상 범위가 억제력과 실효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를 통한 부당이득을 억제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과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여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0조의2제2항제1호·제2호).

법률 제 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를 "손해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2조(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2항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0조의2에 따라 손해배상이 청구된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생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위탁기업이 제25조제1항제1	②
호・제3호・제7호・제14호 또	
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함으로	
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에는 <u>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u>	손해의 5배에 해당하는 금
<u>범위에서</u> 배상책임을 진다. 다	<u>액에 대하여</u>
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	
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u>1. 제25조제1항제1호·제3호·</u>	<u><삭 제></u>
제7호·제14호가목1) 또는 <u>같</u>	
은 호 나목을 위반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	
2. 제25조제1항제14호가목2) 또	<u><삭 제></u>
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	
생한 손해의 5배 이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